

- 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는 분들께 -

《1.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

가나자와시에 거주 중이며, 다음과 같은 아동을

- ① 감호(監護) 하고 있는 모
- ② 감호(監護) 하며,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부
- ③ 부모를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분

은(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아동 등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지급되는 것은 아동이 18살이 되고 맞이하는 최초의 연도 말 분까지. 단, 중증 장애를 가진 아동은 20살 미만까지)

- ① 부모가 혼인(사실혼을 포함)을 해소한 아동
- ② 부(모)가 사망한 아동
- ③ 부(모)가 생사불명인 아동
- ④ 부(모)에게서 1년 이상 유기되고 있는 아동
- ⑤ 부(모)가 재판소에서 DV 보호명령을 받은 아동
- ⑥ 부(모)가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아동
- ⑦ 모가 혼인에 의하지 않은 임신으로 낳은 아동
- ⑧ 부(모)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 ⑨ 모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사정이 불분명한 아동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① 모(부)가 이성과 동거를 하거나 혹은 동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빈번한, 혹은 정기적인 방문 및 생활비 보조가 있는 경우
- ②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있는 경우

※ 추후, 위에 적힌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함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급받으신 수당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당액 (전부 지급할 경우)》

| 아 동 1 인 | 아 동 2 인 | 아 동 3 인 |
|----------|-----------|-----------|
| 45, 500엔 | 56, 250 엔 | 62, 700 엔 |

※아동이 2명인 경우에는 10,750엔을 가산, 3명 이상인 경우 1명당 6,450엔을 가산

《3. 수당의 계산방법》

일부를 지급할 경우,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아동이 1명인 경우

수당액(및 가감액)
 = (가) 45,500 엔 - ((A)수급자의 공제 후 소득액 - B)소득제한 한도액) × (나) 0.0243007 + 10 엔)

10 엔 미만 반올림

A : 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 등 공제를 한 후 양육비의 80% 상당을 가산한 금액
B : 소득제한 한도액은,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의 전부 지급액의 소득제한 한도금액을 적용(소득신고서 상 부양친족 등의 인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동이 2명인 경우 가산액 (가) 10,750 엔 (나) 0.0037483 를 위의 식에 적용시켜 계산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가산액(1인당) (가) 6,450 엔 (나) 0.0022448 를 위의 식에 적용시켜 계산

◆수급자가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산된 수당액(※)과 장애연금의 아동 가산금액과의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수급자 및 대상아동이 장애연금 이외에 공적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계산된 수당액과 공적연금의 금액(월)의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청구자가 장애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에 비과세 공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4. 소득제한에 대하여》

- ① 본인(청구자)의 **소득**이 소득제한 한도액 이상일 경우, 수당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동일생계에 있는 부양의무자(주민표가 세대 분리 되어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가 있는 경우, 그 **소득**이 소득제한 한도액 이상일 경우에는, 수당 전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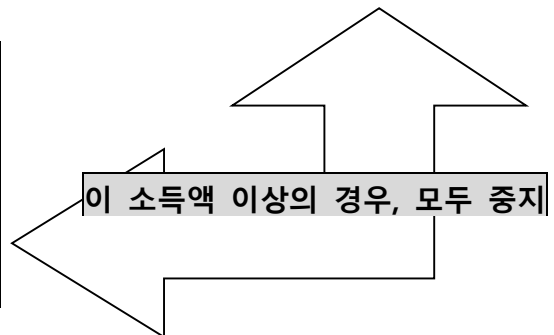
아동부양수당 소득제한 한도액

본인(청구자) 단위 : 엔

| 작년 중 부양친족수 | (아래 금액 미만의 경우) 전부 지급 | | (아래 금액 미만의 경우) 일부 지급 | |
|---------------|----------------------|-----------|----------------------|-----------|
| | 급여수입 금액 | 소득액 | 급여수입 금액 | 소득액 |
| 0명 | 1,220,000 | 490,000 | 3,114,000 | 1,920,000 |
| 1명 | 1,600,000 | 870,000 | 3,650,000 | 2,300,000 |
| 2명 | 2,157,000 | 1,250,000 | 4,125,000 | 2,680,000 |
| 3명 | 2,700,000 | 1,630,000 | 4,600,000 | 3,060,000 |

부양의무자(본인과 동일생계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작년 중 부양친족수 | 급여수입 금액 | 소득액 |
|---------------|-----------|-----------|
| 0명 | 3,725,000 | 2,360,000 |
| 1명 | 4,200,000 | 2,740,000 |
| 2명 | 4,675,000 | 3,120,000 |
| 3명 | 5,150,000 | 3,500,000 |



(주의사항)

※청구자가 부 혹은 모의 경우에는 양육비로서 부 혹은 모 및 아동이 받은 금품 등(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해서, 그 금액의 80%(1 엔 미만은 반올림)가 **소득**으로서 취급됩니다. (양육자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은 전년도(1 월부터 10 월 사이에 신청할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액입니다.

※소득액으로부터 일률적으로 80,000 엔의 공제가 있습니다.

※급여소득 혹은 공적연금 등에 관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100,000 엔의 공제가 있습니다.

※위에 적힌 내용 이외에도 특정 공제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동부양수당 소득제한 한도액 표(별도 용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수당 지불방법》

아동부양수당은 『인정청구서』를 발급받은 달의 다음달 분부터 지급됩니다.

지급일

출수달(1 월, 3 월, 5 월, 7 월, 9 월, 11 월)의 11 일(원칙으로서)에 지난달 분까지 수당이 계좌(등록된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됩니다.

《6. 현황신고서》

- (1) 아동부양수당을 계속해서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년 1 회(접수기간 8 월 1 일~8 월 31 일)** 반드시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 불가)
- (2) 제출하지 않으시면, 변함없이 수급 자격이 있으셔도, **11 월분 이후의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3) **현황신고서를 2 년간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사라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분께서는, **재혼·사실혼** 등에 의해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나 **주소·성명·소득**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으니 잊지 말고 육아지원과로 알려주십시오.

- **현황신고서**...자세한 사항은 《6. 현황신고서》 참조
- **자격상실신고서**...자세한 사항은 《1.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 참조
- **그 외의 신고사항**
 - ① 수당의 대상이 되는 아동 수에 증감이 있었을 경우
 - ② 소득이 높은 부양의무자(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동거 혹은 별거하게 되었을 때
 - ③ 소득의 수정신고를 했을 때
 - ④ 이사·전출 했을 때
 - ⑤ 성명이 바뀌었을 때
 - ⑥ 지불금융기관이 바뀌었을 때
 - ⑦ 아동과 별거하게 되었을 때
 - ⑧ 수급요건에 변경이 생겼을 때
 - ⑨ 공적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 ⑩ 공적연금의 금액이 달라졌을 때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미지급된 수당이 있더라도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수급을 개시하고 5년 경과한 분 등의 일부 지급 정지에 대하여》

수급 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상황 (이혼·사별 등)에 놓인 지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당액의 1/2 이 감소되게 됩니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혹은 일을 할 수 없는 사정 (장애가 있는 등) 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수속을 하면 수당액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가나자와시청 아동미래국 육아지원과

(제 1 본청사 2 층)

가나자와시 히로사카 1-1-1 우편번호) 920-8577

전화 (076) 220-2285

FAX (076) 220-2360